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61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박주민 · 박지혜 · 전현희
김한규 · 박지원 · 서영석
장종태 · 이수진 · 전진숙
최혁진 · 남인순 · 박희승
백혜련 · 서미화 · 김 윤
의원(15인)

제안이유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온, 기상재해 및 감염병의 확산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 기후위기는 보건안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과제이나,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감시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노인·장애인·임산부·어린이 등 기후 취약집단은 건강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전담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표본감시 및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인프라 구축이 절실함.

이에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 기능

을 강화하고,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과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중앙 및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취약집단 보호 시책을 체계화함으로써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등).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감시·연구·평가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관리 체계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8조 및 제9조).

- 마.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표본감시 및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 바.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학조사 및 보건응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사.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에 관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17조).
- 아.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취약집단에 대한 기후위기 건강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8조).
- 자.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관리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 차.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은 중앙기후보건센터 및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시·도지사는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 카.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건강연구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22조).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감시·연구 및 평가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대비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위기를 말한다.
3. “기후보건”이란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극한기온, 기상재해 등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감시·연구 및 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극한기온”이란 여름철(6월부터 9월까지를 말한다) 또는 겨울철(12월부터 2월까지를 말한다)의 기온이 각각 평년 기온(기상청에서 제공하는 30년 평균 기온을 말한다)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상태를 말한다.

5. “기상재해”란 폭염, 한파, 태풍, 홍수, 호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을 말한다.
6.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이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7.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란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원헬스”란 사람의 건강이 동물 및 환경의 건강과 하나로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전략을 말한다.
9. “기후위기 건강영향”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피해를 말한다.
10. “감시”란 기후위기 건강영향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해석, 평가 및 기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기후위기 건강영향 대비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11. “표본감시”란 기후위기 건강영향의 조기인지 및 관리를 위하여 의과학적인 방법으로 기후변화 관련 질병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매개체감시”란 기후위기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및 매개체 내 감염병의 분포 변화와 유입에 대한 조기인지 및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를 과학적 방법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역학조사”란 기상재해 또는 극한기온으로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기후위기 건강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에 건강영향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기후위기와 건강영향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4. “보건응급조사”란 기상재해의 발생으로 주민의 건강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현황과 필요한 보건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위기 건강영향과 그에 따른 건강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기

후위기로 인한 건강영향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그 밖에 의료 분야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기후위기 건강영향의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기후건강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기후건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후위기에 따른 건강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그 밖에 기후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기후 및 건강 관련 의료인 또는 의료업무 종사자
3. 그 밖에 기후건강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심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
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
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기후 취약집단 보호
4. 기후위기 건강영향 관련 원헬스 기반 협업
5. 기후위기 건강영향 관련 연구 및 개발
6. 기후위기 건강영향 관련 국제협력
7. 전문인력양성 및 적응역량강화
8. 기후위기 건강영향 관련 지식보급 및 건강수칙 홍보 등 인식확산

9. 그 밖에 기후위기에 따른 국민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질병관리청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 등

제11조(표본감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표본감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질병의 특성과 지역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위기 건강영향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기후위기 건강영향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후위기 건강영향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단체·시설에 제공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본감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표본감시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매개체 감시)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감시 및 매개체 내 병원체 분석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감시기관(이하 “매개체감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개체감시기관의 장에게 기후변화 관련 감염병 매개체 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개체감시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정보를 관계 기관·단체·시설에 제공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개체 감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개체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매개체감시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상재해 또는 극한기온으로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건강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3. 그 밖에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등 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③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관이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역학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건응급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상재해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와 보건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응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응급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및 제14조에 따른 보건응급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및 제14조에 따른 보건응급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및 제14조에 따른 보건응급조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 등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보건응급조사를 마친 때에는 기후위기 건강영향 및 보건수요의 파

악과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역학조사 또는 제14조에 따른 보건응급조사 결과에 따라 기후위기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기후보건영향평가 등

제17조(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에 관한 조사·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또는 실태조사에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

련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후보건영향평가와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약집단에 대한 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역(이하 “취약집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후위기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기후위기 대응 취약집단
2. 지리적 또는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 접근 취약집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취약집단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기후위기 건강영향 정보와 통계의 관리)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축적·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인·기관·단체(이하 “자료제공기

관”이라 한다)에 기후위기 건강영향 정보와 통계 수집·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료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자료 요구 및 제출,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앙기후보건센터) ① 질병관리청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 및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기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3. 제19조에 따른 기후위기 건강영향 정보·통계 관리 사업 및 제22조에 따른 기후건강연구사업
4. 기후위기 건강영향 예방·관리에 대한 연구

5. 기후위기 건강영향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제21조에 따른 지역기후보건센터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기후위기 건강영향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앙기후보건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후보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관·법인·단체가 위탁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앙기후보건센터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중앙기후보건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역기후보건센터) ①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는 기후위기

건강영향 조사 및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 구역 내 기후보건영향평가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3. 관할 구역 내 기후위기 건강영향 예방·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4. 기후위기 건강영향 관련 교육·홍보
5. 보건응급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기후보건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후보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기관·법인·단체가 위탁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

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기후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역기후보건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후건강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 위기 건강영향과 그에 대한 예방 및 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하 “기후건강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건강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건강연구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기후건강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외 파견 및 국내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후건강연구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기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질병관리청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기후위기 건강영향에 대한 조사·감시·분석 및 평가와 이를 활용한 기후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표본감시 및 매개체 감시에 드는 비용
2. 역학조사에 드는 비용
3. 보건응급조사에 드는 비용
4.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드는 비용
5. 취약집단 조사에 드는 비용
6. 통계 및 정보화 사업에 드는 비용
7. 중앙기후보건센터 및 지역기후보건센터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8. 기후건강연구사업에 드는 비용

9. 제2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에 드는 비용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벌칙)

제28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후보건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에 따라 시행한 기후보건영향평가는 이 법 제17조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